

- ◆ 현지시간 4월 2일(수),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 대상 기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
- ◆ 주요국은 관세 조치에 대한 추가 대응 의지 표명중

1. 주요 내용 및 전망

- (내용) 美 ① 4월 5일(토) 자정부터 모든 수입품 대상 기본관세 10%,
② 4월 9일(수) 자정부터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발표
 - 4월 5일(토) 자정부터 모든 수입품 대상 기본관세 10%가 적용되며,
 - 4월 9일(수) 자정부터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은 별도로 지정된 상호관세율로 변경 적용될 예정

<주요국 상호관세 요약>

| 연번 | 국가명 | 기존 對美 관세율(비관세장벽 포함) | 상호관세율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| 중국 | 67% | 34% |
| 2 | EU | 39% | 20% |
| 3 | 베트남 | 90% | 46% |
| 4 | 대만 | 64% | 32% |
| 5 | 일본 | 46% | 24% |
| 6 | 인도 | 52% | 26% |
| 7 | 한국 | 50% | 25% |
| 8 | 태국 | 72% | 36% |
| 9 | 스위스 | 61% | 31% |
| 10 | 인도네시아 | 64% | 32% |

-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설정과 관련하여,
 - 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기본관세의 최소 기준치는 10%로 설정했으며,
 - ② 특정 100개국에 대해서는 각 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기존 관세율(비관세장벽 포함)의 절반가량을 상호관세율로 지정했다고 밝힘

- USMCA 적용 품목 캐나다, 멕시코 과 232조 적용 품목 철강, 알루미늄, 자동차 및 부품, 부속서 II 내 규정 제품 구리, 의약품, 반도체, 목재 제품, 미국 내 구할 수 없는 특정 필수 광물, 에너지, 에너지 제품 등은 금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

행정명령 주요내용

◆ Section 1: 국가 비상사태 선포

-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, 제조업 및 방위산업 기반 위축, 일자리 손실, 제조 역량 감소등에 기인한 현재 상황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있음
- ※ 행정명령 발동 근거: 국가비상경제권한법(IEEPA,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)
 - * 미국의 안보, 외교, 경제 등에 현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음

◆ Section 2: 상호관세 정책

- 모든 수입품 대상 10% 기본 세율을 적용
- 단,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부록 I 내 명시된 세율 적용(붙임1 참조)

◆ Section 3: 실행

- ① 미 동부 기준 4월 5일 오전 12시 1분부터 모든 수입품 대상 10% 기본관세 적용
- ② 미 동부 기준 4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특정 국가 대상 부록 I 내 국가별 관세 적용
- ③ 단, 하기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음
 - [50 USC 1702\(b\) 해당 품목](#)
 -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를 적용을 받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과 그 파생품
 -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를 적용을 받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
 - 부록 II 내 열거된 구리, 의약품, 반도체, 목재 제품,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필수 광물, 에너지, 에너지 제품 등
 - 미국 통합관세율표 상 제2열(Column 2)에 명시된 모든 품목
 -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향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품목
- ④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에는 동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
 - 협정 미준수 제품에는 25%의 관세가 적용
 - * 캐나다에서 수입된 에너지, 에너지 자원, 포타시(potash)에는 10% 관세 적용
 - 단 상기 USMCA 협정 관련 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, USMCA 협정 준수 품목과 일부 에너지, 에너지 자원 등을 제외한 협정 미준수 품목에는 12%의 관세 적용

- ⑤ 수입품 내 최소 20%가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경우, 해당 수입품 내 비(非)미국산 부품(non-U.S. Content)에만 관세율이 적용됨
- ⑥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(아편) 공급망 대응을 위한 관세 부과 은 동 관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
- ⑦ 중국산 품목에 적용되는 모든 세율은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로부터의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

◆ Section 4: 수정 권한

- 대통령은 교역국이 비상호적인 무역협정을 수정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, 미국과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에서 충분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세금을 줄이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
-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 및 생산 능력이 지속 악화될 경우, 동 행정명령에 따른 세금을 증가시킬 수 있음

자료원: [White House, Presidential Actions \(4.2.\)](#)

2. 주요국 반응

1. 일본

- **(정부)** 경산성, 美 관세(24%) 대응으로 정부 금융 대출 완화*와 특별 상담창구 1천여 곳 설치** 등 기업지원책을 발표 (경제산업성, 4.3일)
 - *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한 중소기업용·소규모 사업자 대상 사업대출 요건 완화
 - * 지역별 상공회의소,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을 활용한 상담창구 설치 추진
-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“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의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미국에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할 것”이라고 재차 언급(4.2일)
- **(기업)** 미국 내 생산 움직임과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 있어 당분간 관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존
 - **(전기·전자/A사)**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, 생산거점 이전 검토중
 - **(배터리/B사)** 미 현지 공급업체와 향후 협력을 강화할 예정

- **(자동차/C사)** 장기적인 수요 감소는 우려되나 상호관세로 인해 단기적인 고객 발주가 급감할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음. 고객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추어 대응 예정

2. 중국

- **(정부)** 상무부, 미국의 상호관세 단호히 반대하며 보복조치를 통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 발표 (中 상무부, 4.3일)
 - 미국의 금번 관세조치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세 인상은 미국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발전 및 공급망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비판
- **(기업)** 관세 조치로 인한 타격 우려, 조속한 대응 요구 증가
 - **(소비재/A사)**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물류비용 상승까지 전반적인 수출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, 중국 또한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**(산동성화장품협회)**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단기적인 수출 주문 감소 및 경쟁 심화는 예상하나,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시장 다각화, 생산 원가 인하, 브랜드 프리미엄화에 주력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음

3. 멕시코

- **(정부)** 세인바움 대통령, 외교부·에너지부 등 행정 내각과 관세 관련 회동 (4.2일)
 - 현지 시각 4월 3일 아침,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·철강·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 관해 포괄적인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예정
 - * 그러나, 멕시코가 우선적으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'나쁘지 않다'는 입장
- **(기업)** 현재까지 별도 특이 움직임은 없으며, 내일 멕시코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전까지 관망세

4. EU

- (정부) EU 집행위, 4.3일 12시(한국시간 기준) 성명서 발표
 - 보복조치를 준비 중이며,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과 협상할 것으로 알려짐

<EU 주요국 인사 반응>

| 인사·국가명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 | 지난 90년간 가장 파괴적 관세인상'으로 평가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교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우려 독일 역시 협상을 통한 해결 선호, 필요한 경우 균형 있고 명확하며 단호한 대응 할 것 |
|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| 마크롱 대통령, 긴급 대책회의 개최 계획 발표 (4.3.), 美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항공우주, 화학, 농업, 주류업, 자동차, 제약 등 업계 대표 소집. 대미 투자 일시 중단 촉구. |
|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| 스페인은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며, 개방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계속 유지할 것. |
|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| 우리는 무역 장벽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음. 미국과 함께 다시 무역과 협력의 길로 돌아가,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. |
| 카린 켈러-주터 스위스 대통령 | (연방정부는) 신속하게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. 스위스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이며, 국제법 준수와 자유무역은 여전히 핵심 가치로 남아 있음. |
|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| 미국이 유럽연합 전체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20%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유감. 나는 관세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며,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일랜드의 일자리와 경제를 보호하는 것임. |
|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| 우리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. 무역 전쟁은 결국 서방을 약화시키고, 다른 글로벌 강대국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. |
|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 | EU의 대응과 협상을 지지하며, EU회원국의 일원으로 준비가 되어있음 |
| 체코 산업부 장관 | 여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단결되고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, 관련하여 EU 장관급 특별회의도 월요일에 개최 예정 |
| 만프레드 베버 유럽국민당(EPP)* 대표 | 오늘은 해방의 날이 아니라, 분노의 날.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공정 무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, 두려움 속에서 이를 공격하는 것으로 결국 대서양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. 유럽은 단결된 모습으로 자국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, 공정하고 단호한 협상에 열려 있음. |

자료 : Reuters(4.3) 및 현지 언론

- * (영국) 스타머 총리, “국익을 위해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것”이라는 입장, 타 국가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된 점에 대해 일부 안도하는 반응도 존재. 상무장관은 “정부와 기업 모두 대응조치 보다는 미국과의 침착한 경제협정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”고 언급

- **(기업)** 관세 조치에 따른 미국 내 생산 고려, 투자 계획 보류 등
 - **(기계/A사)** 전체 매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/5 가량으로 관세 부과 시 미국으로의 판매를 전면 보류할 계획
 - **(화장품/B사)** 미국 내 생산 시설 설립 고려중, 단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생산할지 포장 작업만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
 - **(식품/C사)** 관세 조치에 따른 대미 투자 연기 고려 예정
 - **(자동차/D사)** 자동차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, 중남미 등 대체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미국 시장 내 영업 활동을 통해 관세 위기 타개 예정
 - **(제약/E사)** 미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을 검토중

5. 동남아대양주

- **(정부)**
 - **(베트남)** 관세 대응 관련 긴급 회의 진행중(총리-산업무역부 장관 등)
 - **(인도네시아)** 재무부 수르잔토르 국장, 관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완화 조치 시행 예정임을 발표
 - **(호주)** 앤서니 호주 총리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'논리적 근거가 없다'고 비판하는 한 편 호주가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고 주장
 - * 호주 정부, 철강·알루미늄·제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제도 강화 및 농업 지원금 (5천만 달러), 수출 촉진을 위한 10억 달러 무이자 대출 제공 등 대응책 마련중
 - **(뉴질랜드)** 피터스 윈스턴 외교장관, '미국 행정부와의 대면 접촉으로 우리의 임무 달성' 언급
- **(기업)**
 - **(캄보디아 섬유제조협회)**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로 인해 미국에 수출 중인 캄보디아 섬유·봉제 기업에 상당한 타격 예상
 - **(베트남/제조 A사)** 비용 경쟁력 악화로 미국향 수출 차질 우려

3. 미국 현지 반응

- **(학계)** 관세정책이 미국·글로벌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
 - **(예일대학교)** 미국의 관세정책, 무역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
 - * 일반 중산층 가계에서는 연간 3,800 달러 규모의 가처분 소득 감소 예상, 저소득 가구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5.5% 줄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
 - **(CATO 연구소)**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상호주의를 반영하지 않음, 이에 물가 상승, 경제 성장 저하, 수출 및 제조업 감소가 초래될 수 있음
- **(업계)** 관세가 미국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우려와 관세 도입 환영 입장이 상존
 - **(전미제조업협회)**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서 추가 관세가 제조업체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**(미국소매연맹)** 관세 정책 시행이 소비자가격 상승을 초래하고, 저조한 소비자 신뢰 속 소비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
 - **(전미자동차노조)**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되살릴 것이라며 환영

붙임1: 국별 상호관세율

붙임2: 對美 무역흑자 10개국 별 관세 현황 분석. **끝**

붙임1

국별 상호관세율

| 연번 | 국가명 |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던 관세율 (비관세장벽 포함) | 상호관세율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| 중국 | 67% | 34% |
| 2 | EU | 39% | 20% |
| 3 | 베트남 | 90% | 46% |
| 4 | 대만 | 64% | 32% |
| 5 | 일본 | 46% | 24% |
| 6 | 인도 | 52% | 26% |
| 7 | 한국 | 50% | 25% |
| 8 | 태국 | 72% | 36% |
| 9 | 스위스 | 61% | 31% |
| 10 | 인도네시아 | 64% | 32% |
| 11 | 말레이시아 | 47% | 24% |
| 12 | 캄보디아 | 97% | 49% |
| 13 | 영국 | 10% | 10% |
| 14 | 남아공 | 60% | 30% |
| 15 | 브라질 | 10% | 10% |
| 16 | 방글라데시 | 74% | 37% |
| 17 | 싱가포르 | 10% | 10% |
| 18 | 이스라엘 | 33% | 17% |
| 19 | 필리핀 | 34% | 17% |
| 20 | 칠레 | 10% | 10% |
| 21 | 호주 | 10% | 10% |
| 22 | 파키스탄 | 58% | 29% |
| 23 | 튀르키예 | 10% | 10% |
| 24 | 스리랑카 | 88% | 44% |
| 25 | 콜롬비아 | 10% | 10% |
| 26 | 페루 | 10% | 10% |
| 27 | 니카라과 | 36% | 18% |
| 28 | 노르웨이 | 30% | 15% |
| 29 | 코스타리카 | 17% | 10% |
| 30 | 요르단 | 40% | 20% |
| 31 | 도미니카공화국 | 10% | 10% |
| 32 | UAE | 10% | 10% |
| 33 | 뉴질랜드 | 20% | 10% |
| 34 | 아르헨티나 | 10% | 10% |
| 35 | 에콰도르 | 12% | 10% |
| 36 | 과테말라 | 10% | 10% |
| 37 | 온두라스 | 10% | 10% |
| 38 | 마다가스카르 | 93% | 47% |
| 39 | 미얀마(버마) | 88% | 44% |

| 연번 | 국가명 |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던 관세율 (비관세장벽 포함) | 상호관세율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40 | 튀니지 | 55% | 28% |
| 41 | 카자흐스탄 | 54% | 27% |
| 42 | 세르비아 | 74% | 37% |
| 43 | 이집트 | 10% | 10% |
| 44 | 사우디아라비아 | 10% | 10% |
| 45 | 엘살바도르 | 10% | 10% |
| 46 | 코트디부아르 | 41% | 21% |
| 47 | 라오스 | 95% | 48% |
| 48 | 보츠와나 | 74% | 37% |
| 49 | 트리니다드 토바고 | 12% | 10% |
| 50 | 모로코 | 10% | 10% |
| 51 | 알제리 | 59% | 30% |
| 52 | 오만 | 10% | 10% |
| 53 | 우루과이 | 10% | 10% |
| 54 | 바하마 | 10% | 10% |
| 55 | 레소토 | 99% | 50% |
| 56 | 우크라이나 | 10% | 10% |
| 57 | 바레인 | 10% | 10% |
| 58 | 카타르 | 10% | 10% |
| 59 | 모리셔스 | 80% | 40% |
| 60 | 피지 | 63% | 32% |
| 61 | 아이슬란드 | 10% | 10% |
| 62 | 케냐 | 10% | 10% |
| 63 | 리히텐슈타인 | 73% | 37% |
| 64 | 가이아나 | 76% | 38% |
| 65 | 아이티 | 10% | 10% |
| 66 |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| 70% | 35% |
| 67 | 나이지리아 | 27% | 14% |
| 68 | 나미비아 | 42% | 21% |
| 69 | 브루나이 | 47% | 24% |
| 70 | 볼리비아 | 20% | 10% |
| 71 | 파나마 | 10% | 10% |
| 72 | 베네수엘라 | 29% | 15% |
| 73 | 북마케도니아 | 65% | 33% |
| 74 | 에티오피아 | 10% | 10% |
| 75 | 가나 | 17% | 10% |
| 76 | 몰도바 | 61% | 31% |
| 77 | 앙골라 | 63% | 32% |
| 78 | 콩고 민주 공화국 | 22% | 11% |
| 79 | 자메이카 | 10% | 10% |
| 80 | 모잠비크 | 31% | 16% |
| 81 | 파라과이 | 10% | 10% |
| 82 | 잠비아 | 33% | 17% |

| 연번 | 국가명 |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던 관세율 (비관세장벽 포함) | 상호관세율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83 | 레바논 | 10% | 10% |
| 84 | 탄자니아 | 10% | 10% |
| 85 | 이라크 | 78% | 39% |
| 86 | 조지아 | 10% | 10% |
| 87 | 세네갈 | 10% | 10% |
| 88 | 아제르바이잔 | 10% | 10% |
| 89 | 카메룬 | 22% | 11% |
| 90 | 우간다 | 20% | 10% |
| 91 | 알바니아 | 10% | 10% |
| 92 | 아르메니아 | 10% | 10% |
| 93 | 네팔 | 10% | 10% |
| 94 | 신트마르턴 | 10% | 10% |
| 95 | 포클랜드 제도 | 82% | 41% |
| 96 | 가봉 | 10% | 10% |
| 97 | 쿠웨이트 | 10% | 10% |
| 98 | 토고 | 10% | 10% |
| 99 | 수리남 | 10% | 10% |
| 100 | 벨리즈 | 10% | 10% |
| 101 | 파푸아뉴기니 | 15% | 10% |
| 102 | 말라위 | 34% | 17% |
| 103 | 라이베리아 | 10% | 10% |
| 104 |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| 10% | 10% |
| 105 | 아프가니스탄 | 49% | 10% |
| 106 | 짐바브웨 | 35% | 18% |
| 107 | 베냉 | 10% | 10% |
| 108 | 바베이도스 | 10% | 10% |
| 109 | 모나코 | 10% | 10% |
| 110 | 시리아 | 81% | 41% |
| 111 | 우즈베키스탄 | 10% | 10% |
| 112 | 콩고 공화국 | 10% | 10% |
| 113 | 지부티 | 10% | 10% |
| 114 |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| 10% | 10% |
| 115 | 케이맨 제도 | 10% | 10% |
| 116 | 코소보 | 10% | 10% |
| 117 | 퀴라소 | 10% | 10% |
| 118 | 바누아투 | 44% | 22% |
| 119 | 르완다 | 10% | 10% |
| 120 | 시에라리온 | 10% | 10% |
| 121 | 몽골 | 10% | 10% |
| 122 | 산마리노 | 10% | 10% |
| 123 | 앤티가 바부다 | 10% | 10% |
| 124 | 버뮤다 | 10% | 10% |
| 125 | 에스와티니(스와질란드) | 10% | 10% |

| 연번 | 국가명 |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던 관세율 (비관세장벽 포함) | 상호관세율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26 | 마셜제도 | 10% | 10% |
| 127 | 생피에르 미클롱 | 99% | 50% |
| 128 | 세인트키츠네비스 | 10% | 10% |
| 129 | 투르크메니스탄 | 10% | 10% |
| 130 | 그레나다 | 10% | 10% |
| 131 | 수단 | 10% | 10% |
| 132 |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| 10% | 10% |
| 133 | 아루바 | 10% | 10% |
| 134 | 몬테네그로 | 10% | 10% |
| 135 | 세인트헬레나 | 15% | 10% |
| 136 | 키르기스스탄 | 10% | 10% |
| 137 | 예멘 | 10% | 10% |
| 138 |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| 10% | 10% |
| 139 | 니제르 | 10% | 10% |
| 140 | 세인트루시아 | 10% | 10% |
| 141 | 나우루 | 59% | 30% |
| 142 | 적도기니 | 25% | 13% |
| 143 | 이란 | 10% | 10% |
| 144 | 리비아 | 61% | 31% |
| 145 | 사모아 | 10% | 10% |
| 146 | 기니아 | 10% | 10% |
| 147 | 동티모르 | 10% | 10% |
| 148 | 몬트세랫(Montserrat) | 10% | 10% |
| 149 | 차드 | 26% | 13% |
| 150 | 말리 | 10% | 10% |
| 151 | 몰디브 | 10% | 10% |
| 152 | 타지키스탄 | 10% | 10% |
| 153 | 카보베르데 | 10% | 10% |
| 154 | 부룬디 | 10% | 10% |
| 155 | 과들루프 | 10% | 10% |
| 156 | 부탄 | 10% | 10% |
| 157 | 마르티니크 | 10% | 10% |
| 158 | 통가 | 10% | 10% |
| 159 | 모리타니 | 10% | 10% |
| 160 | 미크로네시아 | 10% | 10% |
| 161 | 감비아 | 10% | 10% |
| 162 | 프랑스령 기아나 | 10% | 10% |
| 163 | 크리스마스섬 | 10% | 10% |
| 164 | 안도라 | 10% | 10% |
| 165 | 중앙아프리카공화국 | 10% | 10% |
| 166 | 솔로몬제도 | 10% | 10% |
| 167 | 마요트 | 10% | 10% |
| 168 | 앵귈라 | 10% | 10% |

| 연번 | 국가명 |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던 관세율 (비관세장벽 포함) | 상호관세율 |
|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69 | 코코스제도 | 10% | 10% |
| 170 | 에리트레아 | 10% | 10% |
| 171 | 쿡제도 | 10% | 10% |
| 172 | 남수단 | 10% | 10% |
| 173 | 코모로 | 10% | 10% |
| 174 | 키리바시 | 10% | 10% |
| 175 | 상투메 프린시페 | 10% | 10% |
| 176 | 노퍽섬 | 58% | 29% |
| 177 | 지브롤터 | 10% | 10% |
| 178 | 투발루 | 10% | 10% |
| 179 | 영국령 인도양 지역 (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) | 10% | 10% |
| 180 | 토켈라우 | 10% | 10% |
| 181 | 기니비사우 | 10% | 10% |
| 182 | 스발바르 얀마옌 제도 | 10% | 10% |
| 183 | 허드 맥도널드 제도 | 10% | 10% |
| 184 | 레위니옹 | 73% | 37% |
| 185 | 도미니카 | 10% | 10% |

자료원: 백악관 Presidential Actions, Annex I (4.3. 수정)

○ (목적) 한국의 주요 對美 수출 품목에 대한 對美 무역흑자국(10개국)의 관세율 분석

① MFN 세율 도출

■ '24년 한국의 對美 수출 10대 품목

(단위 USD 억 %)

| 순위 | HS ⁴ 단위 | 분류 | 금액(비중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8703 | 자동차 | 347(26.4) |
| 2 | 8473 | 컴퓨터 부분 부속품 | 82(6.2) |
| 3 | 8708 | 차량용 부분 부속품 | 71(5.4) |
| 4 | 8523 | 기록 저장매체 | 54(4.1) |
| 5 | 2710 | 석유제품 | 51(3.9) |
| 6 | 8507 | 배터리 | 39(3.0) |
| 7 | 8479 | 기타 기계류 | 26(2.0) |
| 8 | 8418 | 냉장고 | 19(1.4) |
| 9 | 8504 | 변압기 | 18(1.4) |
| 10 | 8542 | 전자집적회로 | 16(1.2) |

※ 철강류(72~73)의 합계는 약 48.3억 달러 규모
 자료원: K-Stat



■ MFN 세율 범위(0~10.0%) 도출

| 순위 | HS ⁴ 단위 | 분류 | MFN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1 | 8703 | 자동차 | 0~2.5% |
| 2 | 8473 | 컴퓨터 부분 부속품 | 0~2.0% |
| 3 | 8708 | 차량용 부분 부속품 | 0~2.5% |
| 4 | 8523 | 기록 저장매체 | 0% |
| 5 | 2710 | 석유제품 | 29~7.0% |
| 6 | 8507 | 배터리 | 25~3.5% |
| 7 | 8479 | 기타 기계류 | 0~2.0% |
| 8 | 8418 | 냉장고 | 0~1.9% |
| 9 | 8504 | 변압기 | 0~6.6% |
| 10 | 8542 | 전자집적회로 | 0% |

※ 철강류(72~73)의 MFN은 0~10.0%

자료원: U.S. 2025 HTS Revision 5

② '24년 對美 무역흑자 10개국 기준 관세 현황

| 순위 | 국가 | '24년 對美 흑자 (USD 백억) | | MFN | 협정세율 | 301조 | 對中 보편관세 | 상호 관세 '25.4.3.~ | 최종 적용관세 (A)+B+(C)+D+(E) | |
|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| B | E | | | | | | | |
| 1위 | 중국 | B | 29.4 | 0~10.0% | - | 7.5~100%* | 20% (2월 10% + 3월 10%) | 34% | 61.5~164% | |
| | | E | 14.5 | | | | | | | |
| | | I | 43.9 | | | | | | | |
| 2위 | 멕시코 | B | 17.1 | - | 0% (USMCA) | - | - | 0% (USMCA) | 0% (USMCA) | |
| | | E | 33.5 | | | | | | | |
| | | I | 50.6 | | | | | | | |
| 3위 | 베트남 | B | 12.3 | 0~10.0% | - | - | - | 46% | 46~56% | |
| | | E | 1.3 | | | | | | | |
| | | I | 13.6 | | | | | | | |
| 45위 | ⁴ 아일랜드 ⁵ 독일 (EU) | 아 독 | | 0~10.0% | - | - | - | 20% | 20~30% | |
| | | B | 8.6 | | | | | | | 8.4 |
| | | E | 1.7 | | | | | | | 7.6 |
| | | I | 10.3 | | | | | | | 16.0 |
| 6위 | 대만 | B | 7.4 | 0~10.0% | - | - | - | 32% | 32~42% | |
| | | E | 4.2 | | | | | | | |
| | | I | 11.6 | | | | | | | |
| 7위 | 일본 | B | 6.8 | 0~10.0% | - | - | - | 24% | 24~34% | |
| | | E | 8.0 | | | | | | | |
| | | I | 14.8 | | | | | | | |
| 8위 | 한국 | B | 6.6 | - | 0% (한미FTA) | - | - | 25% | 25% | |
| | | E | 6.6 | | | | | | | |
| | | I | 13.2 | | | | | | | |
| 9위 | 캐나다 | B | 6.3 | - | 0% (USMCA) | - | - | 0% (USMCA) | 0% (USMCA) | |
| | | E | 35.0 | | | | | | | |
| | | I | 41.3 | | | | | | | |
| 10위 | 인도 | B | 4.5 | 0~10.0% | - | - | - | 26% | 26~36% | |
| | | E | 4.2 | | | | | | | |
| | | I | 8.7 | | | | | | | |

자료원: K-Stat, USTR, U.S. HTS 등 종합

* HS 4단위별 301조 對中 관세율: (8703) 25~100%, (8473) 25%, (8708) 25%, (8523) 7.5~25%, (2710) 7.5~25%, (8507) 7.5~25%, (8479) 7.5~25%, (8418) 25%, (8504) 7.5~25%, (8542) 50% (링크: <https://ustr.gov/issue-areas/enforcement/section-301-investigations/search>)